

권고 사안

대유행 전염병 비상사태 하의 교회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2020 년도 초반의 사태로 인해 일부 교회는 자발적으로 예배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어떤 교회와 중간공의회는 정부가 규정하는 격리 구역 내에 위치할 수 있으며, 이 구역 내에서 정부는 모든 상점, 학교, 예배 장소를 특정 시간에 폐쇄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교회의 지속적인 선교와 사역에 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자연 재해와 같은 비상 상황이나 공공 모임을 금지하는 공중 보건 명령 하에서 교회나 공의회는 그러한 의사 결정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동의회를 온라인이나 화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동의회를 온라인이나 가상의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실행 전에 교회 내규 수정 조항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투표권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토론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회는 회의를 위한 정족수에 대한 규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규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회의에 대해 합리적으로 통보를 받고 논의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할 수 있다면, 교회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그 회의의 정족수는 [x] 명이다."

당회는 전자적으로 또는 가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회는 당회 회의를 온라인이나 가상의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규칙은 교회 내규나 당회의 행정 운영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회는 투표권이 있는 모든 당회원들이 토론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회는 회의를 위한 정족수에 대한 규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규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시무장로들이 온라인 회의에 대해 합리적으로 통보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토론하고 분별할 수 있으며 논의 사항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면, 당회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이 모임의 정족수는 [X] 명의 시무장로인데, 최소 두 명의 시무장로와 한 명의 사회자 (임시, 또는 위임)로 구성된다."

교회나 당회가 온라인 상에서나 가상으로 만날 수 없다면, 교회나 당회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까?

자연 재해와 같은 비상 상황이나 공공 집회를 금지하는 공중 보건 명령 하에서 교회나 공의회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행정 위원회의 임명을 위해 교회 내규나 행정 운영 지침서에 그 규칙을 교회나 공의회가 제시하는 것 또한 교단 헌법상 타당합니다 (유권해석, *회의록*, 2010, Part I, pp. 331-33, Item 05-13).

이 규칙은 교회 성도들의 풍부한 다양성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의사 결정 및 실행에서의 대표성에 대한 완전한 참여와 접근을 제시해야 하는 공의회와 교회의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례서*, G-3.0103).

공의회는 행정 위원회의 핵심 위원들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임명할 수 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이 대표성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매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인원을 늘리고 이를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위원회가 공의회로서, 또 공의회를 위해 바르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규칙은 비상 상황의 종류, 규칙 시행 순서에 대해 명확해야 하며, 행정 위원회의 분명한 해체 시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행정 위원회 임명 규칙은 교회나 공의회가 행정 위원회에 위임하는 권한에 대해 명확해야 합니다.

그 규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 상황이나 공공 집회를 금지하는 공중 건강 명령의 경우에, 당회는 한 명의 목회자/사회자 (임시 또는 위임)와 두 명의 시무장로로 구성된 행정 위원회를 임명한다. 행정 위원회의 위원들로 임명된 구성원들을 매년 검토한다. 행정 위원회는 당회 [및 이사회]의 모든 권한을 보유하게 되며 당회 [및 이사회]로서 기능할 수 있다. 당회가 합리적인 광고와 정족수로, 실제로 모이든 온라인으로 하든,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면, 행정 위원회는 그 업무를 중단하게 되며 당회가 그 권한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노회는 전자적으로 또는 가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회는 노회 모임을 온라인이나 가상의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노회의 행정 운영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회는 투표권을 지닌 노회의 모든 회원들과 위원들이 토론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노회는 이 회의의 정족수에 대한 규칙을 제시할 수 있는데, 최소한 노회원인 목사 세 명과 세 개의 교회의 장로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 규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노회원 목사들과 장로 위원들이 온라인 회의에 대해 합리적으로 통보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토론하고 분별할 수 있으며 논의 사항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면, 노회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이 모임의 정족수는 회원 목사 [x] 명, 장로 위원 [x] 명으로 구성된다, 또는 세 명의 목사와 각기 다른 세 교회의 장로 위원들로 구성된다."

만일 교회나 당회가 온라인이나 가상 회의에 관한 규칙을 제시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몇가지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1. 비록 그 회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진 않으나, 비상 사태의 경우에 당회는 온라인 회의에 대해 충분히 공지하고 정족수가 채워졌으며 적어도 한 명의 사회자가 있으면 온라인의 방법으로 회의를 할 수 있으며, 비상 사태나 공중 건강 명령을 다루기에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비상 사태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충분한 공고는 다양하게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후에 적절하게 소집된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통해 승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당회의 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비상 사태나 공공 집회 금지 공중 보건 명령의 경우에 당회에 의해 임명된 행정 위원회가 기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 당회, 행정위원회가 필요한 공고를 하지 않고 특별 회의에서 비상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국통상회의법에 의하면, 회의 소집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해 특별 회의에서 조치가 취해졌다면, 그 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해선 정기 회의를 통해서 (또는 그 목적으로 적절하게 소집된 다른 특별 회의에서) 그 조직에 의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4-125 페이지 참고)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RONR, Chapter IV, Section 9, Particular Types of Business Meeting, Special Meeting, p. 93)

채택 동의안과 승인 동의안

...

승인 (또는 인정, 확인) 동의안은 부수적인 주요 동의안으로서 모임을 통해 승인받기 전까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행위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정당화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승인 과정이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정기 또는 임시 모임에서 부적절하게 취해진 행위

- 회의 소집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에 관해 특별 회의에서 취해진 행위
- 지시 사항이나 권위를 넘어서서 직분자들, 위원들, 위임자들, 하위 기관들에 의해 행해진 행위; (RONR, p. 124).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당회가 설교를 포함한 화상 예배 후에 가능한대로 빨리 (대개 당일) 실제적인 성만찬을 승인한다면, 당회는 화상 온라인 예배 내에서 성만찬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 보건 명령의 이유로 예배 후 신속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만찬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당회는 성만찬 예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안전할 때까지 성만찬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합니다.

성례전은 당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고 목회자에 의해, 또는 목사의 부재에 대비해 노회에 의해 훈련되고 승인된 사역 장로에 의해 집례되어야 합니다 (규례서, W-3.0410 and G-3.0301b). 말씀이 읽히고 선포되어야 하며 한 명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당회는 주일 외의 사역, 즉 환우 사역과 같은 행사에 대해 성만찬의 집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당회는 주일 예배 후에 가능한 빨리 (대개 당일) 결석자들, 자택 거주자들, 입원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며 말씀과 성만찬의 일치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직제사역자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규례서, W-3.0414).